

의안번호	제 34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7월 4일

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34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7월 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,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를 전승·보급하고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 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인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청사의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

- 대 상: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
- 사용기관: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
- 재산위치: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4로 16
- 사용면적: 건물 2,912.11㎡, 토지 3,004㎡
- 감면내역: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- 적용시기: 2023. 7. 24. ~ 2028. 7. 23.
-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
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

3. 참고사항

□ (재)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현황

○ 개 소 일 : 2005. 11. 7.

○ 설립목적

-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
-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·보급
-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

○ 주요사업

- 문화재 조사·연구 및 관련 자료 발간
-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
- 지역 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
-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업 등의 위임, 위탁사업
-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
-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인 원

(단위:명)

구 분	계	원 장	연구직	사무직	비 고
정 원	30	1	24	5	
현 원	29	1	23	5	

4. 관계법령 발체 : 붙임

《관련 법령 발취》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, 2022. 11. 15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(年數)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(이하 “지식재산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. <신설 2015. 7. 20.>

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0.>

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22. 4. 20.>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[재]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및 보호·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 및 명칭)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, 명칭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<개정 2011.4.1>

제3조(사무소)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.

제4조(정관)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4.1>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자격·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
7. 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행사와 대표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연구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10.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11.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
12.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)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.<개정 2011.4.1>

1. 문화유산의 조사(지표조사, 발굴조사,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)와 연구 및 자료발간
2. 문화유산(지정문화재, 비지정문화재,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보호·관리
3.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
4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5. 그 밖에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6조(재산출연)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<개정 2011.4.1.>

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
2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 등 기타 출연금

제7조(사업계획 및 결산)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입·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1.4.1>

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<개정 2011.4.1>

제8조(보고·검사 등)① 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개정 2011.4.1>

제9조(운영비 등 지원)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잔여재산의 귀속)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귀속된다.<개정 2011.4.1>

제12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자료의 열람 및 제공)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업의 위탁)도지사·시장·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·보호·보존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 준수 의무)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다른 법령의 준용)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1. 4. 1, 2017. 11. 10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